

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본 문서가 다른 문서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순위. 지방계약법·령·규칙 > 2순위. 견적제출 공고문 > 3순위. 설계도면 > 4순위. 시방서

1.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

가. 공 사 명: [천안]국지도57호 사담교 보수보강공사

나. 위 치: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 양곡리 521-4번지 일원

다. 사 업 량: 보수보강 1식(표면보수 $A=62\text{m}^2$, 단면보수($T=30\text{mm}$) $A=48\text{m}^2$ 등)

라. 공사금액: 금297,230,000원(도급: 금271,100,000원 / 관급: 금26,130,000원)

마. 기초금액: **금271,100,000원**(추정가격: 금246,454,546원 / 부가가치세: 금24,645,454원)

① 구조물보수공 51% ② 포장공 12% ③ 교량이음장치공 28% ④ 부대공 9%

바. 공사기간: 착공일부터 90일

사. 공사구분: **종합공사**

사-1. 본 공사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9조 2항에 따라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.
단, 본 공고 5. 에 명시된 특허 보유자와의 하도급계약은 허용합니다.

사-2.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공사입니다.

2.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

가.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<http://www.g2b.go.kr>)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.

나. 본 견적제출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.

다. 총액계약, 지역제한,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,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,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대상 공사입니다.

3. 견적서 접수기간 및 개찰

가.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: 2026. 8. 5.(수) 17:00 ~ 2026. 8. 11.(화) 10:00

나. 개찰일시 : 2026. 8. 11.(화) 11:00

다. 개찰장소 :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북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

※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,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4. 견적제출 참가자격

가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며 동법 시행령 제92조(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)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.

나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,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**종합건설업 중 「토목공사업」을 등록한 업체**이어야 합니다.

※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**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** 공사로 **아래 [①조건과 ②조건을 모두 충족]하는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응찰 가능**합니다.

①조건 :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(지반조성·포장공사업)

②조건 :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(철근·콘크리트공사업)

다만, 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토목공사업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,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제1항에 따라 해당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본 공사는 「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(국토교통부 고시)」 제8조의2 제1항에 근거해 **주력분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.**

다.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(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) 계속 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(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·등록·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)가 **충청남도에 소재**하고 있어야 합니다.

5. 신기술특허 사용에 관한 사항

가. 본 공사는 아래 특허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. 특허 보유권자와 우리 사업소간에 체결한 사용협약서는 G2B 공고에 별도로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특허번호	특허명	특허 보유자	비 고
특허 제10-1681871호	교면 방수층 시공 장치 및 시공 방법	(주)이도이엔씨	도급
특허 제10-2266502호	콘크리트 단면 보수 보강공법		

나. (자체시공 가능 시) 위 특허 사용과 관련하여 낙찰업체가 자체적으로 인력·

장비 등을 투입하여 특허 시공이 가능하면 위 특허 보유자와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허 사용이 가능합니다. 사용 조건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첨부한 신기술·특허사용협약서와 원가계산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. (자체시공 불가 시) 위 특허 사용과 관련하여 낙찰업체가 자체적인 인력·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9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위 특허 보유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합니다. 이 경우 별첨한 원가계산서의 내용 중 기술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합니다. **그 외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.** 사용 조건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첨부한 신기술·특허사용협약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6. 입찰(견적)참가 등록 및 입찰(견적)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

- 가.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- 나.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<http://www.g2b.go.kr>)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다.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.

7.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

- 가. 전자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$\pm 3\%$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작성,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.
- 나. 예정가격 이하 견적자로 국민연금보험료, 국민건강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퇴직공제부금비,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안전관리비, 품질관리비(이하 “국민연금보험료 등”)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(A)을 감액한 금액이 **89.745%**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.
- 다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 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.
- 라.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

결정되며,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.

- 마.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(입찰순위)를 무효로 하고, 재공고 입찰(견적)을 실시합니다.
- 바. 계약체결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g2b)의 전자 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.

8. 견적제출(입찰)의 무효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39조 제4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제11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(견적)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(견적)은 무효로 합니다.

9.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.
- 나.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(산출내역서 포함)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.
- 다. 본 공사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로 당초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관리비를 공사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.
- 라.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확인서,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’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.
- 마.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.

(단위: 원)

합산액(A)	국민연금 보험료	국민건강 보험료	퇴직공제 부금비	노인장기 요양보험료	산업안전 보건관리비	안전 관리비	품질 관리비
19,610,225	4,001,918	3,028,820	1,937,771	397,986	5,194,814	5,048,916	-

- 바.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

－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퇴직공제부금비 :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(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),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(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), 「지방자치단체

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

- 산업안전보건관리비 :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
- 안전관리비 :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(안전관리비)
- 품질관리비 :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「별표 6」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

10.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

- 가.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(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)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(구분관리제) 하여야 하고,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(지급확인제) 합니다.
- 나.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「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」 및 「노무비 전용통장 사본」을 제출해야 합니다.
- 다.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(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,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)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.
- 라.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(先지급, 현금지급,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. 단, 지급확인제는 적용됨)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(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)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(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)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.

11.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

- 가.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(안전보건 확보의무)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·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·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.

《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(법 제4조, 제9조) 》

-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-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- ③ 중앙행정기관·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- ④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- 나.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「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」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. 또한,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「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」를 제출해야 합니다.

12.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 의무 사항

- 가. 본 공사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8조의2에 따른, **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**으로,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**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(10~50%)의 노무비 이상에**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, 비율은 도급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.

- ①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: 100분의 50
- ②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: 100분의 30
- ③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: 100분의 20
- ④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: 100분의 10

- 나.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**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“동법 시행규칙 [별지 제22호의6 서식]의 직접시공계획서”**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- 다.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**노무비 지급, 자재납품, 장비사용 내역,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**하여야 합니다. 아울러,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,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13. 기타사항

- 가. 본 수의계약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6조2에 따른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으로,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,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- 나.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 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**충남넷 홈페이지(계약정보공개시스템)**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니 이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- 1) 계약금액, 계약기간, 계약상대자 등 계약체결 결과
- 2) 선금, 기성금, 준공금, 하도급 등 대금 지급내역 등

- 다. 견적제출자는 관계법령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, 「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」,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,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
- 라.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,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.5%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마.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「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」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.
-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.
 - 공사현장 건설장비 및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(우리 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)의 고용을 권장합니다.
- 바.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,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.
- 사.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지소 및 각 업체와의 문서연락 및 송달은 조달청 나라장터망(특히 비정형전자문서)을 활용하여 처리하며, 각 문서는 사용자의 PC에 해당 문서가 입력되었을 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아.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입니다.
- 자. 이 입찰은 **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**되며, 어떠한 경우에도 **채권 양도가 불가**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차.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수상한 전화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**
(※ 우리 사무소는 공사에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.)

14. 보충정보 제공처

- 가. 전자입찰이용안내 :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(1588-0800)
- 나. 과업 및 설계 설명 :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북부사무소 구조물관리팀 (☎ 041-635-7422)
- 다. 입찰공고, 계약체결 :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북부사무소 서무팀 (☎ 041-635-7415)

2026. 8. 5.

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북부사무소 재무관